제98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 추가(강화)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(ATS)의 수수료 등도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 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8조 2.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 요건(강화) ㅇ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“비상장사의 기업가치가 상장사보다 큰 경우”를 추가 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	1.비중요 2.비중요
2	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(신설) ㅇ 기능성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기준, 교육시설 및 장비기준,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규정 ▶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	1.비중요
3	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(신설) ㅇ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성능인증 받고자 할 경우 충족해야 하는 신청요건 및 차량이 갖추어야 하는 구조·장치 등 규정	1.중요 2.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▶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, 제37조 2.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(신설) ㅇ 운행목적 및 도로·기상·통신 등 운행예정구역 환경이 자율차의 성능인증 사항과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기준 규정 ▶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, 제39조 3.성능인증·적합성승인 취소 및 운행정지명령 세부기준(신설) ㅇ 성능인증의 취소와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의 세부기준 규정 ▶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4.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안전운행 조치(신설) ㅇ 자율주행차 운행 전 안전관리자 지정, 비상대응절차 마련, 자율주행차의 운행 전·중·후 안전점검 및 정비, 승객보호조치 등 안전운행 조치를 하도록 규정 ▶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	5.비중요 6.비중요 7.비중요 8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5.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조치(신설) ㅇ 성능인증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차에 대해 자동차 제작자등이 적합성 승인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무상 수리, 정비부품 공급 및 자료제공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 ▶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.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 조치(신설) ㅇ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차의 운행 중 발생한 고장, 운행가능영역 이탈, 교통사고 등의 정보에 대한 보관·보고 의무 규정 ▶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7.자율주행시스템 변경 대상(신설) ㅇ 자동차제작자등이 자율주행시스템 변경이 가능한 조건 세분화 – 적합성 승인 받은 운행범위 확대를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선, 제작결함 시정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 개선,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이 없는 단순 변경인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자동차제작자등이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준수사항 – 시스템의 무단 해체·조작을 금지하고 자율차 성능 개선을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시스템의 변경 허용이 가능한 경우 규정 ▶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8.적합성 인증 차량 운행 시 점검 사항(신설) ㅇ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운행 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운행 전 시스템 이상 여부, 고장상태, 운행가능영역 등을 점검·정비하도록 하는 규정 ▶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	
4	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재계약 횟수 제한(신설) ㅇ 비아파트형 전세임대 입주자의 거주기간을 8년으로 설정(최초 계약 1회 2년 + 재계약 3회 6년) – 다만, 일반적인 공공임대와는 달리 별도 소득 자산 요건 없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점을 고려, 유사사례(든든전세)와 동일하게 최대 8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함 ▶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5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 · 전자제품(강화) ㅇ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품목 확대 – 현행 49개 품목 외 모든 전기 · 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 부여(산업기기, 교통수단 등 예외항목 제외) ▶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.회수 · 인계 ·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 · 전자제품(강화) ㅇ 회수 · 인계 · 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 · 전자제품 확대 – 현행 50개 품목 외 모든 전기 · 전자제품에 대해 회수 · 재활용 의무 부여(산업기기, 교통수단 등 예외항목 제외) ▶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.회수의무대상 전기 · 전자제품(강화) ㅇ 회수 의무 대상 전기 · 전자제품 확대 – 현행 50개 품목 외 모든 전기 · 전자제품에 대해 회수의무 부여(산업기기, 교통수단 등 예외항목 제외) ▶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강화(강화) ㅇ 사용 기준 지정 성분(자외선 차단성분) 제외(별표2, 1종) –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 ㅇ 사용 기준 강화(별표1, 별표2) – 2,6-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, 벤조페논-3(옥시벤존) ㅇ 사용 기준 신설(별표2, 4종) – 노녹시놀-9,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,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,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▶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,제4조	1.중요
7	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내역 제공 주기 및 방법(신설)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내역 제공 주기 및 방법 구체화 ▶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	1.비중요
8	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전담기관의 지정(신설) ㅇ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규정 ▶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8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협회의 설립인가(신설) ㅇ 한류사업자가 한류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함 ▶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	